

-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·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동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, 또한 동 조례 제10조에서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비로 30,000천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
- 2001년도 경상남도 재해대책기금 사용에 대한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부담분의 설명과 지출 세부사업 결정의 적정성 및 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위치, 규모 등이 파악된 곳이 있는지
- 답 : 현재로서는 미 지정되어 있으나 주로 하천정비와 교량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음.
- 문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원의 구성 상황은
- 답 :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정비대상지 결정, 기금의 지출 등을 심의·의결하고 있음.
- 문 : 재해사전 점검은 년 몇 회이며, 정비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곳도 점검했는지
- 답 : 봄철 해빙기 등 년 5~6회이며, 수시 점검을 통하여 철저를 기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